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합71955(본소), 2015가합75391(반소),
2016가합103(반소)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 점유회수청구 · 점유회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 미르내건설

2. 주식회사 한창건설

변론 종결 2016. 4. 8.

판결 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미르내건설 사이에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미르내건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한창건설 사이에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한창건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당진시 A 임야 12,0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지상 철제 컨테이너박스 단층 창고 6㎡를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3/4을,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3. 2. 1. 주식회사 오토리싸이클링센터(이하 '오토리싸이클링'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오토리싸이클링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리싸이클링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2. 1. 접수 제49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오토리싸이클링의 채권자 B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21.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우리은행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D(중복), E(중복)].

다. 우리은행은 2014.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4. 12. 30. 다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미르내건설(이하 '피고 미르내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 1,9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건물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창건설(이하 '피고 한창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대금채권 2,518,043,079원(= 공사미수금 1,196,820,000원 + 지연이자 1,174,523,079원 + 점유비용 146,700,000원,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각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하 '이 사건 각 유치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에 진행되었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각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 미르내건설은 유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한창건설은 유치권을 포기하였다.
- 2)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각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 주식회사 이레커피(이하 '이레커피'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3)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불법점유이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개시되었다.
- 4)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도로와 인접한 토지 일부분에 한정되어, 그 점유부분과 피고들 주장의 각 공사대금채권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5)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도 없다.

나. 피고들

- 1) 이레커피로부터 피고 미르내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피고 한창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피고 미르내건설은 1,802,000,000원을, 피고 한창건설은 1,196,82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각 공사가 중단된 2008. 11. 10.경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고 유치권의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후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원고는 2015. 2.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피고들이 설치한 컨테이너 뒤편에 별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염가에 매도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4)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민법 제204조에서 정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존부

1)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 여부 가) 갑 제1호증의 4, 5,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미르내건설이 이레커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4. 8.부터 2008. 11. 10.까지 그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피고 미르내건설이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중 1,80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관하여 이레커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2470)이 2010. 5. 8.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9. 3. 26.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8호증,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창건설이 이레커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07. 10. 22.부터 2008. 11. 10.까지 그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피고 한창건설은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중 1,196,8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관하여

이레커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196,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9차872)이 2009. 11.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그 변제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2014. 1. 21. 이전에 각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각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오토리싸이클링센터에 대한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물의 현재 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여부 및 점유 시기 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 9, 10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1, 2, 5, 8, 내지 12, 14,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도로변에 인접한 야산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 피고 한창건설은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경사면을 깎아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와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또한 평탄화된 공장부지가 주변 대지와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 진입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옹벽을 설치하였다.

(2) 이레커피의 부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공사가 중단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G(병합), 이하 '이전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3) 반석디자인 주식회사(이하 '반석디자인'이라 한다)는 이전 경매절차의 6차 매각기일인 2010. 10. 1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2010. 11. 15. 피고 미르내건설과 사이에 반석디자인이 피고 미르내건설에게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 및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 미르내건설이 잔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반석디자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어 위 합의는 이행되지 못하였다.

(4) 이후 이전 경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 28. 주식회사 그린쿡(이하 '그린쿡'이라 한다)에게 매각되어 그린쿡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린쿡은 피고 한창건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1407)를 제기하였다가 그린쿡이 피고 한창건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한창건설이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2013. 5. 16. 성립되어 그린쿡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5) 2011. 9.경, 2013. 6.경, 2013. 10.경 촬영된 이 사건 진입도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들이 설치한 2동의 컨테이너가 위 진입도로의 길목을 막고 있고, 그 주변에는 피고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뜻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6) 원고는 2015. 2. 13.경 주식회사 휴먼종합관리에 의뢰하여 피고들이 설치한 2동의 컨테이너 뒤편에 추가로 컨테이너(이하 '원고측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여 피고들의 점유를 배제한 채 주식회사 휴먼종합관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4, 5,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공사를 수행하다가 이레커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낙찰받았던 반석디자인과 그린쿡 모두 피고들에게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들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뒤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변과 인접한 부분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이 사건 진입도로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진입로였던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진입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현장에 직원들을 상주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진입도로 및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팻말 및 현수막을 부착하였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더라도 유일한 진입로를 차단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 또한 이 사건 진입도로에 피고들이 설치한 컨테이너 뒤편에 원고측 컨테이너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직원이 현장을 잠시 비운 틈을 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은 이례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2008. 11. 10.경부터 원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한 2015. 2. 13.경까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공동으로 점유해왔다고 판단된다.

라)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한창건설이 그린쿡과 유치권 포기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점유를 중단하여 2015. 2. 13. 이전부터 이미 피고들이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위 피고 한창건설의 유치권 포기는 조건부 포기로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유치권이 확정적으로 포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을나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창건설은 그린쿡 및 오토리싸이클링과의 협의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후 2013. 6.경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정리하는 공사를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고,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2008. 11. 10.경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였으나 피고들이 진입로 차단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들은 계속해서 그 장소에 위치해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들이 2015. 2. 13. 이전에 이미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사이의 견련관계 가) 피고 미르내건설의 경우

피고 미르내건설의 이 사건 건물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미르내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유치권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미르내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 또는 토지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 한창건설의 경우

피고 한창건설의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한창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유치권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한창건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 또는 건물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진입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점유부분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한 진입로를 차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미르내건설의 이 사건 건물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한하여, 피고 한창건설의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한하여 그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4) 피고들의 유치권 양도 및 포기 여부 가) 원고는 피고 미르내건설의 경우 유치권을 반석디자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한창건설의 경우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이전이 있으면 유치권도 당연히 이전되지만,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채권과 함께 목적물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미르내건설이 2010. 10. 14. B과

'유치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현장 점유권 이임은

B에게 양도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건물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일정한 대금을 받고 점유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며, 피고 미르내건설이 그 점유를 실제로 B에게 이전해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미르내건설의 유치권이 B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창건설이 2013. 5. 16. 그린쿡 및 오토리싸이클링과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에 따르면 그린쿡은 유치권 포기에 관한 합의금으로 피고 한창건설에게 517,000,000원을 2013. 8. 1.까지 지급함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한창건설이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한창건설이 확정적으로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국 피고들이 유치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여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피고 미르내건설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한하여, 피고 한창건설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한하여 적법하게 성립하여 존재하고[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고(민법 제328조 참조), 그 점유 상실이 불법적인 점유 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를 회복하기까지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들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 원고가 2015. 2. 13. 피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여 피고들의 점유가 상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들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가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못함을 이유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 미르내건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 및 피고 한창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각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그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와 같이 피고별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점유회수청구권의 성립 여부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 2015. 2. 13. 원고가 피고들 몰래 이 사건 진입도로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점유를 빼앗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점유침탈자인 원고에 대하여 점유회수로서 원고측 컨테이너의 철거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손인희

판사유정희

별지